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1010056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1.11.2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03.

<http://www.donsubaek.com>
donsubaek@naver.com

『돈수백』

정 보 공 개 서

‘(주) 푸디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 푸 디 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38-1외2필지백조주상복합@205
대표전화번호 : 1566-9879
대표팩스번호 : 032-361-2313
가맹사업부 : 1566-987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돈수백』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 푸디안	돈수백 외 1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38-1외2필지백조주상복합@205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8. 07. 28.	2008. 08. 01.	이강일	1566-9879	032-361-2313
	법인등록번호	120111-0471657	사업자등록번호	122-86-01389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이강일/(주) 푸디안	돈수백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38-1외2필지백조주상복합@20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강일	1566-9879	032-361-231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김하윤/(주) 푸디안	돈수백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38-1외2필지백조주상복합@20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강일	1566-9879	032-361-231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이유나/(주) 푸디안	돈수백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38-1외2필지백조주상복합@20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강일	1566-9879	032-361-231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돈수백』이라 합니다)의 내용

①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돈수백	-
상 호	돈수백 _____ 점	-
상표(서비스표)	국내상표 도형복합 일반	등록번호(일자) : 41-0189791-0000(2009.09.14) 40-0858274-0000(2011.03.24)
광 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② 귀하께서 사용하실 국내상표입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①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859,706	3,998,021	1,861,685	1,342,777	186,630	115,107
2022년	6,430,619	4,345,010	2,085,609	1,648,854	369,998	212,525
2023년	18,173,960	14,082,774	4,091,186	1,623,225	93,536	35,447

㉡ 그 근거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②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강일	대표이사	2008. 08. 01~ 현재	(주)푸디안 대표이사	업무전반 총괄
	김하윤	사내이사	2008. 08. 01~ 현재	(주)푸디안 사내이사	업무전반 및 대외홍보
	이유나	감사	2008. 08. 01~ 현재	(주)푸디안 감사	업무전반 감독 및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 푸디안	가맹사업 경영	1979.6~현재	[돈수백] 브랜드의 외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1979.6~2019.4 2021.9~현재	[명동칼국수] 브랜드의 외식사업 경영

명동칼국수는 2019.4 가맹사업중단 후 2021.9 가맹사업 재개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만료일
돈수백	제품사용 및 대가 수수	출원연월일 2008.08.11. 등록연월일 2009.09.14.	출원번호 41-2008-0021695 등록번호 41-0189791-0000	이강일	2029.09.14
		출원연월일 2010.01.19. 등록연월일 2011.03.24.	출원번호 40-2010-0002958 등록번호 40-0858274-0000		2021.03.24



①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돈수백』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8년 8월 20일

돈수백은 2008년 8월 20일부터 홍대점에서 가맹본부 대표(이강일)이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돈수백』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 푸디안	돈수백	이강일	2008. 08. 01~ 현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38-1외2필지백조주상복합@205

3.『돈수백』업종

영업표지	업종	
『돈수백』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돼지국밥, 순대국밥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돈수백』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	13	-	11	11	-	12	12	-
서울	8	8	-	6	6	-	7	7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1	1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2	2	-	2	2	-	2	2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돈수백』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6	-	-	3	1	13
2022	13	-	-	2	-	11
2023	11	1	-	-	-	12

6.『돈수백』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돈수백』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 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푸디안	명동칼국수	20110100560	기타외식	4/0	6/0	7/0

* 한편, 명동칼국수는 2020년 4월 가맹사업을 일시 중단후 2021년9월 가맹사업 재개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① 바로 전 사업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지역	2023년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2	573,021	18,993	1,757,358	53,677	178,200	4,808	
서울	7	586,215	19,873	1,757,358	53,677	249,103	9,201	6곳 산정
부산	-							
대구	-							
인천	1	해당없음		-		-		5곳 미만
광주	-							
대전	1	해당없음		-		-		5곳 미만
울산	-							
세종	-							
경기	1	해당없음		-		-		5곳 미만

강원	-						
충북	2	해당없음	-	-			5곳 미만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② 바로 전 사업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

『돈수백』가맹점사업자가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8. 『돈수백』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돈수백』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2개	2,799일 (7년8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지역/지사명	대표자	관리가맹점수	계약기간	지사의 권한
충북/충북지사	김준호	2	2015.12.04.~계속	가맹점모집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번길 41-48		
	전화번호	043-234-2128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돈수백』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27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11. 가맹금 예치

- ①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 후 1일 이내에 SC제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가맹본부 관리점	주소	문의
SC제일은행	인천부평지점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46	032-528-8591

- ② 귀하는 또한 SC제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SC제일은행을 가맹금 예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어 지금은 별도의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약정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① 귀하가『돈수백』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의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의 구분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②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에 관한 설명

- ㉠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 아래의 표에 제시된 금액 중 최초의 가맹금인 1,280만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최초 가맹금 및 보증금 등>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액	가맹금 등 반환여부	지급기한	비고
가맹금	5,500	브랜드 사용권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보증금은 부가가치 미포함이며, 보증보험증권 으로 대체 가능
계약이행보증금	4,000	계약해지 시 반환		
교육비	1,650	조리교육 및 매뉴얼 제공		
초기홍보비	1,650			
합 계	12,800			

- ③ 보증금은 상품, 관리비, 위약금에 대한 보증금으로 가맹계약 종료 시 반환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④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

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31쪽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99㎡(30평)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118,250		-	-	매장상황 및 가맹점장의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협력업체	59,400	1,980	인테리어목 공사작일(40 (%), 목공 마감일(30%), 주방기기입 고일 30%	공사착공 전 계약취소	3.3㎡당 1,980
전면 및 외부공사		6,600	220		설치 전 계약취소	파사드 및 외부마감 공사
간판	협력업체	6,600	220			LED 전면 및 돌출 간판
의탁자	협력업체	9,900	330			15세트 기준 1조 추가시 750
주방설비·기 물	협력업체	33,000	1,100			냉장, 냉동 설비 및 주방기물 일체
초도물품	당사	2,750		초도물품 입고 2일 전에 당사에 지급 (상품 미 공급 시 반환가능)		
별도금액	당사 또는 지정업체 (미정)	매장상황 및 가맹점장의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지급; 착공전70%,잔금 오픈3일전 30%				철거, 냉난방기, 가스, 전기승압, 화장실, 기타 경비 비용 등 ※ POS는 자율

a)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b)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가맹신청자가 자체 시공을 할 경우 전국『돈수백』의 이미지 통일을 위하여 본사의 감리를 받아야 하며, 본사가 의뢰한 업체에 별도의 **감리비를 3.3㎡당 22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하여야 합니다.

c) 실 평수 66㎡ 이하의 평수는 66㎡로 산정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⑤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점포미보유시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의 입지를 선정 •점포보유시 : 당사 브랜드와 적합성 판단	※ 입지선정의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는 가맹점의 입지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⑥ 가맹점사업자와 그 피고용인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채용기준	계약·채용 조건
가맹점사업자	제한이 없음	· 교육이수자	·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 절도 등 범죄사실이 없을 것 · 만20세 이상일 것 · 기타 가맹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피고용인	제한이 없음	· 용모단정	· 만 20세 이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⑦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초도물품과 관련한 비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귀하는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초도물품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b) 초도물품과 관련한 반환의 경우 물품을 개봉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없으며, 영업개시전 해지 및 물품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령 후 1주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 상기의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⑧ 당사의 규정은 가맹금을 본 가맹계약 체결 후 1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하며, 가맹금의 분할납부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전월매출액(부가세별도)의 1.65%	다음달 10일까지	반환하지 않음	상표사용대 가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광고 및 판촉 분담기준에 의한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당사는 가맹점공급 식자재를 직접 제조 및 협력업체 공급을 통하여 제공하므로 차액가맹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 가맹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가맹점의 사무실 및 기타지역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	수시	문의: 가맹사업부 1566-9879
	- 운영방법 및 계획 파악을 위한 면담 및 자료요청 권리	수시	
고객관리	- 서비스 관찰 및 고객 또는 피고용인과 면접할 수 있는 권리	수시	
회계관리	- 회원자료 및 회계장부 등 경영전반에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시	
시설관리	- BI적용 및 낙후 시설 개선 요구의 권리	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께서 가맹계약을 재계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가맹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으로 최초 2회에 한하여 재가맹금 금이백이십만원(₩2,200,000)(V.A.T 포함)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가맹계약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a)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종료합니다.

b)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 등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a)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의 양수인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가맹기간의 잔여기간이 계약기간으로 인정되며,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과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b) 또한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신규계약을 원하면 당사가 검토 후 양수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c) 이러한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18~19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돈수백』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a) 귀하께서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돈수백』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영업표지,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b) 귀하께서는 당사에게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전산 및 회원관리프로그램 등을 반환하고, 『돈수백』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표장권,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본 계약 종료이후에도 당사의 상표·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c) 귀하께서 동조 b)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d) 귀하와 당사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① 귀하가『돈수백』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a)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

b)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②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돈수백』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①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1)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지정된 상품·용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돈탕반, 오소리탕반, 섞어탕반, 돈수백, 수육, 모듬수육, 소곱창전골 등(19쪽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 계약의 해지	

- 2) 귀하가 위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3)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의 별첨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②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1)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하여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 별로 기재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 계약의 해지	

거래상대방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타 업체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용역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서면 시정 요구와 주문 편성의 즉시 중단	-
당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는 각종 물품 등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등을 고객판매 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회 위반 : 서면 시정 요구와 계약 해지 가능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2) 귀하가 지정된 고객 이외의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3)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③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단위:원)	상품명	권장가격(단위:원)
돈탕반		9,000	냉만두국	9,000
섞어탕반		9,000	만두국	9,000
오소리탕반		9,000	떡만두국	9,000
돈수백		13,000	왕만두	7,500
소곱창국밥		10,000	꼬마옹심이	6,000
얼큰탕반		11,000	떡갈비물냉면	9,000
수육	소	29,000	떡갈비비빔냉면	9,000
	중	34,000	김치짜글이	14,000
	소	39,000	술국	20,000
묵은지수육		38,000	족발편육	14,000
소곱창전골	중	30,000		
	대	40,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가격은 2024년 4월 기준이며 가격의 통보방법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국밥과 순대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돈수백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기준으로 도로기준 사방 500m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 ①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 →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갱신	가맹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 등 계약갱신 진행 후 신규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① 당사는 가맹점이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②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 특정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돈수백』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돈수백』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당사는 가맹점/직영점별 전용상품 구분이 없으며,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의 기간

『돈수백』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가맹계약기간의 연장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 1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연장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지며, 재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②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②, 아니오→ 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④, 아니오→ 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⑤, 아니오→ 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	①+15일 이내

를 하였습니다습니까? 예→ B, 아니오→ 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C, 아니오→ 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 B, 아니오→ 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B, 아니오→ 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E, 아니오→ 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9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이며, '갑'은 가맹본부를 '을'은 가맹점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①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및 광고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연장 기준 등의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등록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갑'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①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4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가맹계약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이며, '갑'은 가맹본부를 '을'을 가맹점사

업자를 의미합니다.)

'갑'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제5조('을'의 자격요건과 자격유지 의무)에 규정된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을'이 제16조의 가맹점 개점 승인 보류 판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3. '을'이 제17조(영업개시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을'이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제26조(경업금지 의무), 제27조(부당한 영업 등의 행위 금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이 제28조(경영지도)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을'이 제33조('을'에 대한 '물품 등'의 공급과 대금지급, 판매가격)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을'이 제37조('물품 등'의 공급 및 경영지원 등의 중단)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을'이 제42조 규정의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9. '을'이 제44조의 제2항의 행사참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물품 등'을 주문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On-Line 및 Off-Line 상에서 '갑'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11. '을'이 본 가맹점과 동종의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사업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12. '을'이 계약체결 후 2월 이내에 타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13. '을'이 가압류, 가처분, 조세채납처분 등을 받은 경우
14.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해지권이 유보하거나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당사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가맹계약서 제 4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이며, '갑'은 가맹본부를 '을'은 가맹점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을'은 당사의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및 당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 효력 기간 중이라도 서면에 의하여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①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 ②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④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사업본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합니다. 또한 2개월 전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돈수백 브랜드와 포스운영시스템 유지되는 조건으로 양도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사업본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돈수백 가맹사업부 1566-9879

- ②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권한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인수 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과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신규계약을 원하면 당사가 검토 후 양수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①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②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사업본부 검토(면담 포함, 1개월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본부와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허용하지 않습니다.	-	
업무위탁	허용하지 않습니다.	-	

- ④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최초 가맹금은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원전 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돈수백』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돼지국밥과 동종의 업종 ○ 순대국밥집	해당 없음	문의: 돈수백 가맹사업부 (1566-987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① 귀하께서는 사업의 특성상 매일 영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영업시간은 08:00 ~ 24:00(월~금(평일))/ 09:00 ~ 24:00(토요일, 일요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당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께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 3일전까지 신청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③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④ 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1566-9879로 하시기 바랍니다.
- 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근무형태 및 권장 종업원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4인 이상	직접 근무	가맹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복장제한

귀하의 피고용인은 당사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나 귀하의 피고용인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현장 청결	담당자 현장 방문 → 인원 및 장비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연	돈수백 가맹사업부 (1566-9879)	
친절도	담당자 현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2회/연		
품질 관리	담당자 현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연		

9. 광고 및 판촉 활동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광고 참여 결정 → 광고 전 최종 분담금 확정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가 맹점모집광고	50%	50%		
	가맹점 모집광고	100%	0%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 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 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②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③ 가맹점사업자 모집광고 등에 대한 비용부담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광고의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①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②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③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약 45일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	7일~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①~④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사업계획서 작성	- 가맹희망자 사업계획서 작성	-	
면접	- 개설관련 상호 의견 조율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1차 시장조사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제공 15일 후	
가맹금 예치	- SC제일은행에 가맹금 입금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가맹점 입주건물확정	- 입주 계약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소요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10일 소요	
교육 실시	- 사전 입문교육 실시	7일 소요	
초도물품 입고	- 오픈 초기에 필요한 초도물품구비	2일 소요	
그랜드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홍보 진행	-	

①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① 분쟁에 관한 가맹계약서 제55조 상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은 당사를, ‘을’은 귀하를 의미합니다.)

- ① '갑'과 '을' 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유추해석하여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따른다.
- ②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 앞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를 제안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조정 결정이나 중재판정에 따른다. 조정의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동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과 '을'이 합의하는 관할법원인 () 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법원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②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돈수백 가맹사업부 1566-9879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 자부담(실 비)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귀하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돈수백』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 및 가맹점의 구성원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초기) 교육	- 회사소개 - 영업 및 운영 교육	이론 및 실습 교육	매장 오픈 전 3일 교육 매장교육 4일 등 총7일 실시	필수교육
보수 교육	- 고객불만사례 - 서비스 개선사례 - 신규 상품 안내	이론 및 실습 교육	가맹계약 기간 내에 필요시 실시	임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돈수백』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점 전 교육 PROGRAM은 별첨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7일	1,650	최초 계약 시 이수하며 기본인원은 2명임
보수 교육	1일	실비청구	필요시 실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계약자, 주방직원, 홀직원 등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조치를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별첨> 가맹점 초도물품목록 및 필수공급품목

(1)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 거래상대방은 본사 및 지정업체이며 거래형태는 모두 강제 또는 권장입니다. 불가피하게 귀하께서 자점매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 및 당사의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만 합니다.

(2) 주방집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주방기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별첨>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별첨> 개점전 교육 PROGRAM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별첨>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첨> 가맹점 현장 점검표

가맹점 현장 점검표

* 가맹점명 :

* 점검일 : 년 월 일

* 점검인 :

구분	관리항목	관리상태					비고
		매우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우수	
1	복장(청결, 착용)						
2	장비관리상태(청결)						
3	장비보유(장비구축)						
4	가맹점유지상태(청결)						
5	청소상태(품질관리)						
6	검수시 고객응대태도						
7	서비스 시간(시행력)						
8	레포트 작성(절차준수)						
9	고객지시사항 이행(서비스)						
10	사전/사후 커뮤니케이션						
11	A/S 처리(사후관리)						
12	레포트 관리(품질관리)						
13	재고관리(입/출고관리)						
14	청소 방법(품질관리)						
15	A/S 발생횟수(품질관리)	5회	4회	3회	2회	1회	
점수							

* 매우불량 : 2점 , 불량 : 4점, 보통 : 6점, 우수 : 8점, 매우우수 : 10점

* 점수 총합을 150점으로 하며 평균점인 75점 미만으로 평가받은 가맹점의 경우 주문 또는 기타 다른 사항에 있어서 소정의 패널티와 함께 본사 집체보수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한다.

* 점검표는 본사와 가맹점 상호가 각각 확인 후 소지하도록 한다.

확인자 서명 :

(인)

<별첨>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별첨> 정보공개서 등 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점주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인근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주)푸디안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가맹본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인근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주)푸디안